

오산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07.27.]

1. 건설위치

오산청학 H-1블록-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9 (178세대)
 오산세교 주상1블록-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10 (720세대)
 오산청호 2블록-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13 (448세대)
 오산세교2 A-6블록-경기도 오산시 송로 11(603세대)
 오산세교2 A-7블록-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1,136세대)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자산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자산,기간·연령요건) 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자격구분	완화내용
소득요건	◦ 적용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요건	◦ 적용 배제 (단,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4,542만원 이하)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주택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요건	◦ 청년(사회초년생) 계층 : 소득종사기간 [완화조건] 7년 이내[완화전 5년 이내]면 가능 ◦ 신혼부부 계층 : 혼인기간 [완화조건] 10년 이내[완화전 7년 이내] 또는 [완화조건]9세 이하[완화전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면 가능 ◦ 한부모 계층 : [완화조건]9세 이하[완화전 6세이하]자녀를 둔 한부모이면 가능

- 오산권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07.28. ~ 2007.07.2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완화조건]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1.07.27.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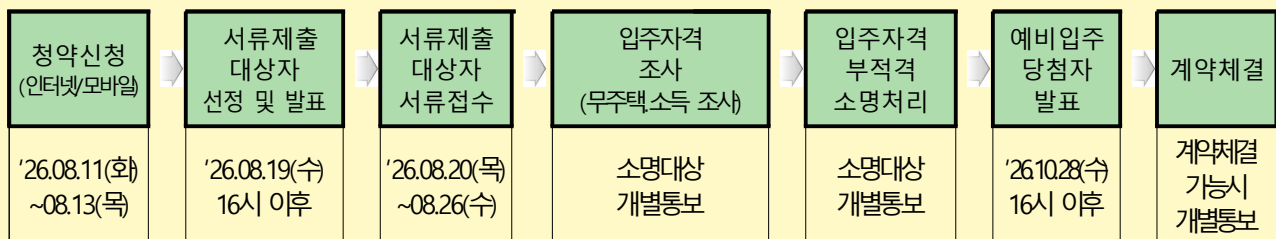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간: 2026.08.11.(화)~2026.08.12(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현장접수시 공고문 본문 [5. 신청서류] 17P~20P 구비서류 항목 참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세부내역은 (공고문 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참조]



※현장신청

'26.08.11(화)~08.12(수)

10:00~16:00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모집대상에 없는 단지별 공급형은 모집하지 않음)

■ 임대대상

지구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합 계				158	885								

계				40	50								
오 산 청학 H-1	16	대학생/청년	38	12	10	16.66	8.8299	2.3627	-	27.8526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19.02
		주거급여수급자									20		
	26A	대학생/청년	63	18	20	26.36	13.9710	3.7384	-	44.0694	10		
		주거급여수급자									20		
	36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62	10	20	36.62	19.4089	5.1935	-	61.2224	10		

계				28	140								
오 산 청호 2	16	대학생/청년	150	12	30	16.78	8.7028	1.9549	6.2548	33.6925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18.12
		주거급여수급자									20		
	26A	대학생/청년	72	0	40	26.14	13.5572	3.0455	9.7438	52.4865	10		
		주거급여수급자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18	6	5	26.30	13.6402	3.0641	9.8034	52.8077	20		
	36A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190	8	60	36.81	19.0911	4.2886	13.7210	73.9107	10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18	2	5	36.94	19.1586	4.3038	13.7695	74.1719	20		

계				56	155								
오 산 세교 2 A-6	21A	대학생/청년	92	19	30	21.40	12.1539	2.1912	9.5639	45.3090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23.08
	21B	대학생/청년	136	15	40	21.40	12.1539	2.1912	9.5639	45.3090	1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58	9	10	26.35	14.5722	2.6982	11.7761	55.3965	20		
	26C	대학생/청년	61	13	15	26.35	14.5722	2.6982	11.7761	55.3965	10		
	43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81	0	60	43.45	22.9625	4.4492	19.4184	90.2801	10		

지구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				14	310								
오산 세교 2 A-7	16	대학생/청년	440	0	100	16.41	9.3424	1.6211	6.1160	33.4895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19.02
		주거급여수급자									20		
	26A	대학생/청년	240	6	80	26.48	15.0754	2.6160	9.8691	54.0405	10		
		주거급여수급자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38	7	10	26.48	15.0754	2.6160	9.8691	54.0405	20		
	36A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0	1	100	36.83	20.9678	3.6385	13.7266	75.1629	10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58	0	20	36.83	20.9678	3.6385	13.7366	75.1629	20			

계				20	230								
오산 세교 주상1	16	대학생/청년	194	0	80	16.54	10.1256	1.5583	5.5402	33.7641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17.12
		주거급여수급자									20		
	26A	대학생/청년	324	0	100	26.88	15.7241	2.5325	9.0038	54.1404	10		
		주거급여수급자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48	4	10	26.99	15.6452	2.5429	9.0406	54.2187	20		
36A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0	16	40	36.79	20.7530	3.4663	12.3232	73.3325	10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욕실 및 현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 세대**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오산청학H-1, 오산청호2, 오산세교2 A-7, 오산세교 주상1 행복주택 16형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 계층” 물량, 26A, 형의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 물량, 36, 36A형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물량은 각지구의 공급형별로 통합 모집 및 공급합니다.
- 오산청학, 오산청호2, 오산세교2 A-7, 세교주상1 행복주택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쿠팡(2구형), 냉장고(소형) 등 빌트인 생활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추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이며,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 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계약금·잔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지구	공급 형별 (㎡)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오산 청학 H-1	16	대학생/청년(소득無)	15,980	500	15,480	74,570	(+)2,000	17,980	64,570
							(-)13,000	2,980	112,480
		청년(소득有)	16,920	500	16,420	78,960	(+)3,000	19,920	63,960
							(-)14,000	2,920	119,790
		주거급여수급자	14,100	500	13,600	65,800	(+)1,000	15,100	60,800
							(-)11,000	3,100	97,880
	26A	대학생/청년(소득無)	24,820	500	24,320	115,820	(+)11,000	35,820	60,820
							(-)20,000	4,820	174,150
		청년(소득有)	26,280	500	25,780	122,640	(+)12,000	38,280	62,640
							(-)21,000	5,280	183,890
		주거급여수급자	21,900	500	21,400	102,200	(+)8,000	29,900	62,200
							(-)18,000	3,900	154,700
	36	청년(소득無)	34,680	500	34,180	161,840	(+)19,000	53,680	66,840
							(-)28,000	6,680	243,500
		청년(소득有)	36,720	500	36,220	171,360	(+)20,000	56,720	71,360
							(-)30,000	6,720	258,8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0,800	500	40,300	190,400	(+)22,000	62,800	80,400
							(-)33,000	7,800	286,650

지구	공급 형태 (㎡)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오산 청호 2	16	대학생/청년(소득無)	14,280	500	13,780	66,640	(+)1,000	15,280	61,640
							(-)11,000	3,280	98,720
		청년(소득有)	15,120	500	14,620	70,560	(+)2,000	17,120	60,560
							(-)12,000	3,120	105,560
		주거급여수급자	12,600	500	12,100	58,800	(+)0		
							(-)10,000	2,600	87,960
	26A	대학생/청년(소득無)	22,100	500	21,600	103,130	(+)8,000	30,100	63,130
							(-)18,000	4,100	155,630
		청년(소득有)	23,400	500	22,900	109,200	(+)9,000	32,400	64,200
							(-)19,000	4,400	164,610
		주거급여수급자	19,500	500	19,000	91,000	(+)6,000	25,500	61,000
							(-)16,000	3,500	137,66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25,080	500	24,580	117,040	(+)11,000	36,080	62,040
							(-)20,000	5,080	175,370
	36A	청년(소득無)	31,620	500	31,120	147,560	(+)17,000	48,620	62,560
							(-)26,000	5,620	223,390
		청년(소득有)	33,480	500	32,980	156,240	(+)18,000	51,480	66,240
							(-)27,000	6,480	234,99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7,200	500	36,700	173,600	(+)20,000	57,200	73,600
							(-)30,000	7,200	261,100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35,340	500	34,840	164,920	(+)19,000	54,340	69,920
							(-)29,000	6,340	249,500
오산 세교 2 A-6	21A	대학생/청년(소득無)	20,740	500	20,240	96,780	(+)7,000	27,740	61,780
							(-)17,000	3,740	146,360
		청년(소득有)	21,960	500	21,460	102,480	(+)8,000	29,960	62,480
							(-)18,000	3,960	154,980
	21B	대학생/청년(소득無)	20,740	500	20,240	96,780	(+)7,000	27,740	61,780
							(-)17,000	3,740	146,360
		청년(소득有)	21,960	500	21,460	102,480	(+)8,000	29,960	62,480
							(-)18,000	3,960	154,98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28,120	500	27,620	131,220	(+)14,000	42,120	61,220
							(-)23,000	5,120	198,300
	26C	대학생/청년(소득無)	25,160	500	24,660	117,410	(+)11,000	36,160	62,410
							(-)20,000	5,160	175,740
		청년(소득有)	26,640	500	26,140	124,320	(+)12,000	38,640	64,320
							(-)22,000	4,640	188,480
	43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9,600	500	49,100	231,460	(+)27,000	76,600	96,460
							(-)41,000	8,600	351,040

지구	공급 형별 (㎡)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 액 (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오산 세교2 A-7	16	대학생/청년(소득無)	16,660	500	16,160	77,740	(+)3,000	19,660	62,740
							(-)13,000	3,660	115,650
		청년(소득有)	17,640	500	17,140	82,320	(+)4,000	21,640	62,320
							(-)14,000	3,640	123,150
		주거급여수급자	14,700	500	14,200	68,600	(+)1,000	15,700	63,600
							(-)12,000	2,700	103,600
	26A	대학생/청년(소득無)	26,520	500	26,020	123,760	(+)12,000	38,520	63,760
							(-)22,000	4,520	187,920
		청년(소득有)	28,080	500	27,580	131,040	(+)14,000	42,080	61,040
							(-)23,000	5,080	198,120
		주거급여수급자	23,400	500	22,900	109,200	(+)9,000	32,400	64,200
							(-)19,000	4,400	164,61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29,640	500	29,140	138,320	(+)15,000	44,640	63,320
							(-)24,000	5,640	208,320
	36A	청년(소득無)	37,400	500	36,900	174,530	(+)20,000	57,400	74,530
							(-)31,000	6,400	264,940
		청년(소득有)	39,600	500	39,100	184,800	(+)22,000	61,600	74,800
							(-)32,000	7,600	278,1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000	500	43,500	205,330	(+)24,000	68,000	85,330
							(-)36,000	8,000	310,330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41,800	500	41,300	195,060	(+)23,000	64,800	80,060
							(-)34,000	7,800	294,220
세교 주상1	16	대학생/청년(소득無)	17,680	500	17,180	82,500	(+)4,000	21,680	62,500
							(-)14,000	3,680	123,330
		청년(소득有)	18,720	500	18,220	87,360	(+)5,000	23,720	62,360
							(-)15,000	3,720	131,110
		주거급여수급자	15,600	500	15,100	72,800	(+)2,000	17,600	62,800
							(-)12,000	3,600	107,800
	26A	대학생/청년(소득無)	28,220	500	27,720	131,690	(+)14,000	42,220	61,690
							(-)23,000	5,220	198,770
		청년(소득有)	29,880	500	29,380	139,440	(+)15,000	44,880	64,440
							(-)24,000	5,880	209,440
		주거급여수급자	24,900	500	24,400	116,200	(+)11,000	35,900	61,200
							(-)20,000	4,900	174,53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31,920	500	31,420	148,960	(+)17,000	48,920	63,960
							(-)26,000	5,920	224,790
	36A	청년(소득無)	39,100	500	38,600	182,460	(+)21,000	60,100	77,460
							(-)32,000	7,100	275,790
		청년(소득有)	41,400	500	40,900	193,200	(+)23,000	64,400	78,200
							(-)34,000	7,400	292,3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6,000	500	45,500	214,660	(+)25,000	71,000	89,660
							(-)38,000	8,000	325,49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2024.07.28.이후 졸업 또는 중퇴)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요건 배제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④ 총 자산가액 배제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 순위

1순위	오산시 또는 연접지역(평택시, 화성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오산시,평택시,화성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7.28. ~ 2007.07.27.)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요건 배제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④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有 또는 소득無)을 결정함

※ 청년 계층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㉓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㉓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해당세대 범위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오산시 또는 연접지역(평택시, 화성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오산시,평택시,화성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소득요건 배제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④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9세 이하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오산시 또는 연접지역(평택시, 화성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오산시,평택시,화성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1961.07.27. 이전 출생일)

- ① 소득요건 배제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②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구분	해당세대	비고
주거급여수급자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공급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예비입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청약 신청 (PC 또는 모바일) 2026.08.11(화)10:00 ~ 08.13(목)16: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신청내역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당일만 가능 (현장접수) 2026.08.11(화) ~2026.08.12(수) 당일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제외) ※ 65세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신청장소]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2026.08.19(수) 16: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2026.08.20(목) ~ 08.26(수)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편 보내실곳: (우)18114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 빠른등기우편은 2026.08.26(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처리 ※ 신청단지,신청접수번호 필히 기재	2026.10.28 (수) 16:00 이후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청약결과 확인』 『당첨/낙찰 결과조회』 클릭 또는 ※ ARS : 1661-7700	당첨자 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65세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방문시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시 공고문 본문 [5. 신청서류] 17P~20P 구비서류 항목 참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 합니다.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청약접수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빠른등기우편(일반우편 불가)으로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자산 보유(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 있음)

■ 인터넷(PC·모바일)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접수창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 현장 신청자는 [5.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서류 발급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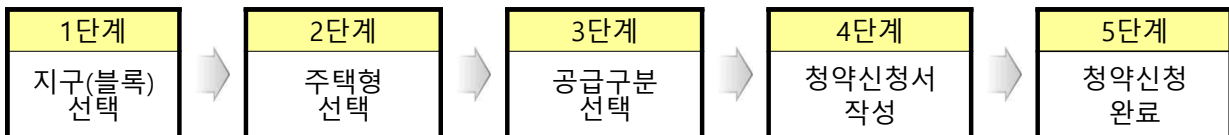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6.08.11(화)10시~08.13(목)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08.11(화)10시~08.13(목)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8.11(화) ~ 08.12(수) 업무시간(10:00~16:00)내 가능**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신청 장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24 수청프라자3층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시 반드시 아래 **준비서류[공고문 (본문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므로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안내

신청장소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3층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대중교통편	(지하철) 오산대역 1번 출구(도보 5분 거리) (버 스) 스마트시티센타앞 하차 : 8, 32, 201, C1, C2, 5200, 8302, M5532
지 사 약 도	
※ 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이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08.19(수) 16시 이후)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6.08.20(목) ~ 2026.08.26(수)**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기간: **2026.08.20(목) ~ 2026.08.26(수)**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접수 불가**)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8114)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6.08.26(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접수자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므로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참고 P.18~P.20)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 접수시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자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센터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필수 작성) 입주자자격 완화 관련 약약서 (필수 작성)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현장방문 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	공사양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인정 받으려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공사양식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청 년 계 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또는 해당 직장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 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국세청 해당 직장 국세청등 해당 학교 병무청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u>상세증명서</u>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됨) ※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국세청 또는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국세청등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6. 10. 28(수)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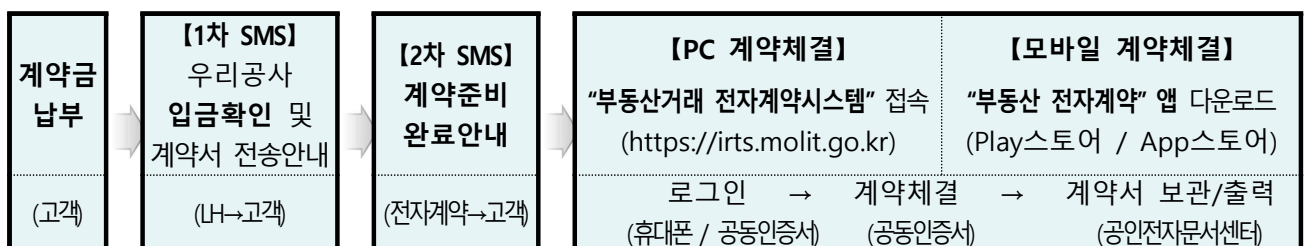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계약방법은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며, 공가여부 및 입주가능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개별안내 드립니다.

■ 전자계약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전 공급대상 계층 공통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 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오산권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으로 통보바랍니다.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명부 제외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당첨자(입주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 됩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 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단지특성 및 유의사항 (※ 단지특성은 변경될 수 있음)
지구여건 (공통)	• 오산세교지구는 서울중심부에서 40km, 수원으로부터 15km 남측에 위치하며, 국도1호선 및 경부선 전철[세마역, 오산대역]이 통과하며, 지구남측에 물향기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동측에 위치한 북오산IC로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함 •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사항 (공통)	• 주택소유, 소득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특성 오산 청학 H-1	[단지 외부 여건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단지 정문은 오산대학교 후문과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천주교 오산성당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대호초, 중학생은 오산중학군(오산중, 대호중)에 각각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는 단지 인근에 오산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운암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가 위치하나 오산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오산시 전역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없고 지상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부 세대는 소음, 매연, 자동차 전조등 투영, 야간조명,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96대이며, 주차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으로서 사용자가 난방 및 온수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 (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합니다. • 관리사무소 및 행복나눔센터(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외부에 패키지에어컨 및 보일러 설치로 일부세대(인접동 저층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부지레벨,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크기·색채·위치·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의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층 하부 PIT층을 통하여 동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의 8층 이상 일부세대는 복도측과 옥상에 설치된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고저차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상 도로폭의 차이 및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주변도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진입도로 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서측 완충녹지에 면한 도로는 단지와 레벨차이로 인한 웅벽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 기계실 및 펌프실, 배수펌프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및 발전기실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용(물뿌리개 겸용) 수도꼭지가 설치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 온수분배기는 세대 싱크 하부장에 설치됨(36㎡형에 한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창호형 환기구를 이용한 제4종 환기방식(자연환기)을 적용합니다. • 빌트인 가구 2구형 가스쿡탑, 소형 냉장고 및 책상은 16㎡형 세대만 적용됩니다. • 본 단지는 복도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강우·강설시 미끄럼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특성 오산 세교 주상1	[단지 외부 여건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단지 인근 지원시설용지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등 일부용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는 40m 도로, 서측, 남측은 20m도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에 세마역이 위치하고 있어 전철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초등학교(6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3개교)가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모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본 단지는 행복주택(3개동)과 오피스텔 1동(분양) 혼합(Social Mix) 단지입니다. • 아파트는 17층~23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서측에 차량 출입구가 설치되나, 행복주택 전용 출입구는 남측 출입구이며, 서측 출입구는 오피스텔, 상가 전용 출입구입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서쪽 오피스텔동 하부(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멀티프로그램실, 보육시설은 501동 1층, 경로당, 관리사무실은 503동 PIT층,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센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으며,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과 대학생계층의 경우 단지내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360대이며, 주차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차량 차단기 소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는 화장실에 난방용 코일이 설치되며, 그 외의 세대는 화장실에 별도의 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503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단지 동측 및 501동 남측에 방음벽(높이 3.5M~9M)이 설치됩니다.
---	--

[단지 외부 여건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인근에 위치한 학교, 중학교는 오산중학군(오산중, 대호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인근에 오산고, 운암고, 운천고, 오산정보고가 위치하나 오산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오산시 전역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여건상 본 단지 서측으로 약 1.2km 지점에 오산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약 1km 지점에 오산시 하수처리장(오산환경사업소)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1204동과 1205동 동측), 기계실(열교환실)/지하저수조(1201동 남측), 환풍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 출입구(1201동과 1202동 사이, 1204동과 1205동 사이)를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 일부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798대이며, 주차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합니다.
-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주차장 및 놀이터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빌트인 가구(전자제품)인 2구형 가스쿡탑, 냉장고 및 책상은 16㎡형 세대만 적용됩니다.
- 본 단지는 복도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강우·강설시 미끄럼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201동, 1203동, 1207동 옥상층 및 후문 경비실 지붕에 설치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1m입니다.

단지특성

오산
세교2
A-7

단지특성

오산
세교2
A-6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북측으로 약 2.3km 지점에 금암변전소가 설립될 예정이며, 남동측으로 약 1.1km 지점에 열병합 발전소(DS파워), 약 1.4km 지점에 오산시 하수처리장(오산환경사업소)이 위치해 있습니다.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702동) 도로 경계 완충녹지 너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지 북서쪽 1.4km 직선거리에 세원화학, 대상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건물 동측 약 1.3km 직선거리에 오산역(수도권 1호선), 오산역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터미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 하부 지상1~4층은 사회적기업, 관리사무소/경로당, 작은도서관, 택배보관함 및 우편물 수취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702동 지상 3~4층은 주거약자형 세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시험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하자 보수 등의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0m, 출입구 높이는 2.70m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473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2대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북측 건물에 위치합니다.
- 재활용창고는 지하주차장 지하1층 주출입구 하부에 위치합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공용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쿡탑에는 팬이 없으며, 덕트 계통이 상시 음압이 되도록 하는 공용 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S/W가 정문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어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총 14대(17인승 6대, 15인승 8대)로 아파트 12대, 사회적기업 1대, 옥외승강기 1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701동 10층(지붕층), 704동 15층(지붕층), 705동 18층(지붕층) 및 지하주차장 지하 1,2층에 설치합니다.
- 저층세대는 보안등(총 46개소 설치예정)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특성 오산 청호2	[단지 외부 여건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고현초등학교, 중학생은 성호중학군(성호중, 오산원일중)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고, 고등학교는 단지 인근에 성호고, 운암고가 위치하나 오산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오산시 전역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 및 서측은 휴먼시아 1단지(국민임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동측은 완충녹지와 23m 도로와 접해 있으며, 북측은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200m 이격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부 여건]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으로서 사용자가 난방 및 온수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합니다. •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 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 외부에 패키지에어컨 및 보일러 설치로 일부세대(인접동 저층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23m 차량도로가 있어 단지 외 도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315대이며, 주차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동, 202동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하게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고저차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 상 도로 폭의 차이 및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완충녹지에 면한 도로 및 남측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와 접한 구간은 단지와 레벨차이로 인한 웅벽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 기계실, 펌프실, 배수펌프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및 발전기실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201, 202동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1m입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201동 옥상층에 설치합니다.
---------------------------------------	--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계약 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시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상기 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7.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